

[서식 예] 사실조회신청서 (차량등록사업소)

사실조회신청

사 건 2000가소000 손해배상(기)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사실조회 할 곳

ㅇㅇ시 차량등록사업소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○)

2. 사실조회 할 내용

<u>차량등록번호 ○○가◇◇◇</u>의 현재 소유자의 ①성명, ②주민등록번호, ③ 주소 등 인적사항. 끝.

> 2000. 0. 0. 위 원고 000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민사○단독 귀중



제출법원	수소법원	관련조문	민사소송법 제294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
의 의	법원은 공공기관·학교, 그 밖의 단체·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·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.		
기 타	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지식,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,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,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(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2270 판결).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(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21022 판결). 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